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5 선고 2021가단531778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

피고1. A

2.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

변론 종결2022. 8. 22.

판결 선고2022. 9. 5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66,775,613원 및 그 중 66,775,384원에 대하여 2021. 11. 18.부터 2022. 5. 7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6. 29. 체결된

매매계약을 66,775,613원 및 그 중 66,775,384원에 대하여 2021. 11. 18.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%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우즈베키스탄인 B는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신용보증의 약정 및 대출 실행

1) 원고는 피고 A과 ① 2019. 2. 11.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, 보증번호 C, 보증금액 50,000,000원, 보증기한 2024. 2. 1.로 된 신용보증서, ② 2020. 4. 7.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, 보증번호 D, 보증금액 20,000,000원, 보증기한 2025. 4. 4.로 된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해 주어, 피고 A이 소외 E은행(이하 '소외 은행'이라 한다)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.

2)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,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,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

나.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

1) 대위변제금 피고 A은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 하여,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21. 11. 18. 소외 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67,616,924원을 변제하였고, 그 후에 841,5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66,775,384원이다.

2) 지연손해금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채권자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1996. 12. 30.부터 2010. 12.

1.까지는 연 17%, 2010. 12. 2.부터 2015. 5. 31.까지는 연 14%, 2015. 6. 1.부터 2018. 1. 31.까지는 연 12%, 2018. 2. 1.부터는 연 10%이다.

3) 확정손해금 위와 같이 원고가 대위변제금 중 841,540원을 회수함으로써 229원의 확정손해금채권[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위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]이 발생하였다.

※계산근거※

$466,920\text{원} \times 10\% \times 1(2021.11.18. - 2021.11.18.) / 365 = 127\text{원}$

$374,620\text{원} \times 10\% \times 1(2021.11.18. - 2021.11.18.) / 365 = 102\text{원}$

다.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

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1. 6. 29. 피고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2021. 7. 30.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행위'라 한다)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1.의 가, 나항 기초사실에 의하면, 피고 A은 원고에게 66,775,613원[= 대위변제 잔액 66,775,384원 + 확정손해금 229원]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 66,775,384원에 대하여 2021. 11. 18.부터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2. 5. 7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 요지

원고는, '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피고 B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가액배상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'고 주장하고, 이에 대하여 피고는 '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'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그러므로 살피건대, 을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가족, 친족 기타 친분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, 피고 A과 피고 B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점, 피고 B는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하고,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선의의 수익자인 사실이 인정된다.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최성수

별지